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7년 10월 22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부천시 광역교통 정보기반 확충 및 ITS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업소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를 신설하고
-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뉴타운 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며
-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일부 사무 조정과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신설 : 부천시교통정보센터(안 제2조 2호)

나.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뉴타운개발과로 변경하고 도시국 도시균형

개발과를 신설(안 제10조의3 제1항)

다.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기획 사무를 교통정보센터로 이관하고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국가기반보호, 인력동원, 을지훈련 사무를 추가함.(안 제11조 제2항 제6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보센터 업무특성상 교통행정과에 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업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서는 과설치가 바람직하나 총액인건비 제도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하는 불가피한 조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사업소를 폐지하는 방침으로 조직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 다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에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기능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소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굳이 5급 관리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도시 구축사업을 비롯한 앞으로 센터에서 해야 할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시 공무원, 경찰, 시설관리공단 등 복합적인 업무성격상 5급 관리자가 필요하며, 채용은 공채를 통해 이루어 질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4명으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2~3단계 사업이 2013년까지 추진되는데 교통정보센터 업무가 정착되는 그 시점에 사업소로 편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사업에 따라 공무원 증원될 계획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안정적인 조직기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 업무도 센터에서 추진하게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U-도시 구축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며, 센터에서는 U-교통 구축분야를 담당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 관련 과 명칭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과를 주거환경개선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폭 넓은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균형개발과로 의견을 모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현재 교통정보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4명으로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행정기구 신설로 보임. 앞으로 교통정보센터의 기능적 측면과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소 신설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의결년월일	2007. 10. 26 (제139회)

제출년월일 : 2007. 10. 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부서의 사무를 조정하고,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능을 강화하며, 부천시교통정보센터 개관에 따라 관련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속기관의 신설: 부천시교통정보센터(안 제2조·제16조·제17조 및 별표 1)
- 도시국 도시개발과를 도시국 뉴타운개발과로 변경하고, 도시국 도시균형개발과를 신설함.(안 제10조의3)
-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 중에서 교통기획 사무를 교통정보센터로 이관하고, 국가기반보호, 인력동원, 을지훈련 사무를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로 분장함.(안 제11조제2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2조 내지 제105조”를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 시립도서관, 교통정보센터

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등”을 “실·과·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급등”을 “직급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정비등”을 “정비 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도시개발과”를 “뉴타운개발과, 도시균형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원내”를 “공원 내”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교통행정·교통기획”을 “교통행정”으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
체계보호

제12조 중 “제104조제1항의 규정과”를 “제113조와”로 하고, “같은법시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한다.

제15조 중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관장)”을 “(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관장”을 각각 “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시립도서관

가. 도서의 수서 및 정리

나. 도서의 열람·대출 및 장서관리

다.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라.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마.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보센터

가. 교통기획·교통정보화 사업

나. ITS(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다. U-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제18조 중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조제3항·제4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부천시시립도서관책마루분관란 다음에 부천시교통정보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명	소재지
부천시교통정보센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9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사업소: 시립도서관 3. (생략) <p>제3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시 분청 국장의 직급과 분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소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조(목적) ----- ----- <u>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u>----- ----- -----<u>제10조에 따라</u>----- ----- ----- ----- ----- ----- -----</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 ----- ----- ----- -----<u>다음 각 호</u>-----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 시립도서관, 교통정보센터 3. (현행과 같음)</p> <p>제3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 ----- -----<u>실·과·소장 등</u>----- ----- ----- ----- -----</p>

현행	개정안
<p>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u>직급</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의2(환경수도국에 두는 과) ①·② (생략) 1.~5. (생략) 6. 하수행정·하수처리장 운영·하수시설관리·하수관망 <u>정비</u> 등 하수도에 관한 사항</p> <p>제10조의3(도시국에 두는 과) ①도시국에 도시계획과, <u>도시개발과</u>, 녹지공원과, 건축과, 시설공사를 둔다. ② (생략) 1.~2. (생략) 3. 도시녹화·공원조성·산림환경·<u>공원내</u>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4.~5. (생략)</p> <p>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② (생략) 1. <u>교통행정·교통기획·교통지도·운수</u>에 관한 사항 2.~5. (생략) 6. <u>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 및 민방위</u>에 관한 사항</p>	<p>② ----- ----- -----<u>직급</u> 등 -----.</p> <p>제10조의2(환경수도국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 -----<u>정비</u> 등 -----</p> <p>제10조의3(도시국에 두는 과) ① ----- -----<u>뉴타운개발과</u>, <u>도시균형개발과</u>----- -----.</p> <p>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공원 내</u>----- -----</p> <p>4.~5. (현행과 같음)</p> <p>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1. <u>교통행정</u>----- -----</p> <p>2.~5. (현행과 같음) 6. <u>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 및 민방위</u>에 관한 사항, <u>국가기반체계보호</u></p>

현행	개정안
<p>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p> <p>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u>지역보건법 제9조</u>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p> <p>제15조(설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제16조(관장) 사업소에 <u>관장</u>을 두며, <u>관장</u>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7조(소관사무)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p>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제113조와-----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u>에 따라----- -----.</p> <p>② <u>제1항에 따른</u>----- -----.</p> <p>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u>지역보건법</u>」 제9조----- -----.</p> <p>제15조(설치) 법 제114에 따라--- 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p> <p>제16조(<u>관장 또는 센터장</u>) --<u>관장 또는 센터장</u>-----<u>관장 또는 센터장</u>----- -----.</p> <p>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u>관장</u>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서의 수서 및 정리</u> 2. <u>도서의 열람·대출 및 장서관리</u> 3. <u>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u> 4. <u>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u> 5. <u>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립도서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도서의 수서 및 정리</u> 나. <u>도서의 열람·대출 및 장서관리</u> 다. <u>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u> 라. <u>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u> 마. <u>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제18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p> <p>제19조(구청장)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p> <p>② (생략)</p> <p>제20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u>2. 교통정보센터</u></p> <p><u>가. 교통기획·교통정보화 사업</u></p> <p><u>나. ITS(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사항</u></p> <p><u>다. U-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u></p> <p>제18조(설치) ① -----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 -----.</p> <p>② 제1항에 따라----- ----- -----.</p> <p>제19조(구청장) ① 제18조에 따라-----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 (설치) ① --제3조제3항·제4조제3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p> <p>② 제1항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15 324 359 369">[별표 1]</p> <table border="1" data-bbox="199 385 504 580"> <tr> <td data-bbox="199 385 397 504"> <p data-bbox="220 465 370 510">〈신 설〉</p> </td> <td data-bbox="397 385 504 580"></td> </tr> </table>	<p data-bbox="220 465 370 510">〈신 설〉</p>		<p data-bbox="542 324 686 369">[별표 1]</p> <table border="1" data-bbox="526 385 1414 580"> <tr> <td data-bbox="526 385 884 504"> <p data-bbox="531 465 873 510">부천시교통정보센터</p> </td> <td data-bbox="884 385 1414 504"> <p data-bbox="895 465 1402 510">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9번지</p> </td> </tr> </table>	<p data-bbox="531 465 873 510">부천시교통정보센터</p>	<p data-bbox="895 465 1402 510">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9번지</p>
<p data-bbox="220 465 370 510">〈신 설〉</p>					
<p data-bbox="531 465 873 510">부천시교통정보센터</p>	<p data-bbox="895 465 1402 510">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9번지</p>				